

제24조중 “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”를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”로 하고, “동법 제26조”를 “동법 제32조”로 한다.

제26조중 “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”를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3647호(1999.7.31)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제2항의 초과현원중 2002년 7월 31일현재 직급별·직렬별 초과현원 267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④제3항의 초과현원중 2003년 2월 28일현재 직급별·직렬별 초과현원 234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3867호(2001.6.15)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초과현원중 2002년 7월 31일현재 직급별·직렬별 초과현원 267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제2항의 초과현원중 2003년 2월 28일 현재 직급별·직렬별 초과현원 234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17
----------	-----

2003년 2월 일
문화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월 28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월 29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(2003.2.17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이기호 기획관리실장)

가. 개정이유

◦ 「교육행정정보시스템」의 조기 안정화와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보된 정원을 중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총 정원 증원 : 8명(7,324명 → 7,332명)
- 금회 증원되는 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윤병국)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교육행정정보시스템」의 조기 안정화와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보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안됨.
- 이번 개정안은 「교육행정정보시스템」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2.12.2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8명의 한시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.
-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총 정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따라서 이번에 증원되는 8명의 한시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승인된 내용이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사항임.
-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8명을 반영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수는 현행 총 7,324명에서 7,332명으로 늘어남.

※ 이번에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03.1.1~2004.12.31까지 2년간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7,324명”을 “7,332명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2호중 “7,306명”을 “7,314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원 8명(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인력)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0
----------	-----

2003년 2월 일
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안일자 : 2003년 1월 29일
- 다. 회부일자 : 2003년 1월 30일
- 라. 상정일자 : 2003년 2월 17일

(제1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)